

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1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 2015. 11. .
제 출 자: 중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- 현청사의 노후와 향후 청사공간 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심의

2. 주요 내용

-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15년도 말 조성액	2016년도 조성계획			2016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2,744,115	50,000	0	50,000	2,794,115	

- 수입계획 : 50,000천원
- 이자수입 : 50,000천원
- 지출계획 : 없음

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, 제13조
-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
-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

4.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: 붙임

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(의안번호 1181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5. 11. 20.(금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12. 7.(월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영국 행정지원국장)

- 현청사의 노후와 향후 청사공간 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심의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15년도 말 조성액	2016년도 조성계획			2016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2,744,115	50,000	0	50,000	2,794,115	

- 나. 수입계획 : 50,000천원
 - 이자수입 : 50,000천원
- 다. 지출계획 : 없음

4. 근거 법규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, 제13조
- 나.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
- 다.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